

멀티미디어 정보의 지적재산권 대책

(Device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Multimedia Information)

채 명 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
Chae, Myung Ki

요 약

멀티미디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종 정착지는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독창성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보 선진국의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주어질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 허락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멀티미디어 정보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정보는 데이터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데이터는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정보는 “어떤 상황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식으로서 데이터의 유효한 해석이나 데이터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한다.¹⁾ 따라서 굳이 멀티미디어 정보를 정의한다면,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복합 매체의 지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보와 데이터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도 정보는 그 개념 자체가 갖는 의미 뿐만 아니라 자료나 저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2.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

가. 멀티미디어 정보물의 제작을 위한 권리 처리

아날로그 시대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는 주로 숫자, 문자 형태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즉 텍스트, 그래픽, 영상, 동화상, 소리 등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다량의 저작물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정보제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보제작자는 각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물은 제3자에게 양도나 설정되거나, 또는 존속 기간의 만료나 권리의 포기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 상태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제작자는 저작물의 이용에 앞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존재하는가,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취득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²⁾

1) 저작재산권의 처리

가)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이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1호). 어문저작물은 보통 인쇄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영화 제작이나 음반 제작에 이용되기도 한다.

어문저작물은 보통 4가지 계약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첫째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다(저작권법 제41조 제1항).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권리는 종국적 이전이 된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또

1) 한국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1994년 12월 제2판, p. 961.

2) Neil Jenkins, "The Exploitation of US and UK Copyright in Multimedia Games", 4 *Ent.LR* 143, 1994.

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저작권법 제41조 제2항).

둘째는 출판권 설정 계약이다. 이 계약은 권리를 설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출판권을 다시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출판권 설정 계약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설정된 출판 이외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출판권자는 설정 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저작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까지를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는 배타적 출판 허락 계약이다. 이 권리는 출판권 설정 계약과 거의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출판권 설정 계약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출판권자가 직접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배타적 출판 허락 계약은 직접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이다.

넷째는 단순 이용 허락 계약이다. 이 계약은 보통 저작권자가 1회에 한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정기간행물 등에 실리는 원고들의 저작권은 원고의 집필자가 갖게 된다. 집필자는 회사나 단체 등에게 자신의 원고를 특정 권 또는 부에 1회만 게재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해당 회사나 단체 등이 간행물에 실린 원고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만들거나 멀티미디어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집필자로부터 다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 사진 및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사진을 촬영한 사진제작자이다. 따라서 사진을 이용하려면 사진제작자의 허락만 얻으면 된다. 그러나 초상이 담긴 사진의 경우는 사진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사진에 수록된 초상인의 허락도 함께 받아야 한다. 사진제작자의 허락만 받고 초상 사진을 이용하면 초상인의 초상권 침해가 된다.

미술저작물은 작품의 소유자와 작품의 저작권자가 다를 수 있다. 미술 작품은 작품 자체가 갖는 물권적 권리와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인 저작권이 함께 내재하고 있다. 미술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식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미술 작품을 매매하는 경우, 미술 작품에 대한 물권적 권리는 소유자에게 이전되지만, 특약이 없는 한,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영상저작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만큼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되는 저작물로는 소설, 음악, 미술, 사진 등이 있다. 소설 등의 저작권자는 자신들의 저작물을 영상저작물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특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행상 특약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5년 동안 i)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ii) 영상저작물을 복제·복제하는 것, iii)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iv)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v)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제74조)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다. 과연 영상제작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라 방송용 영상저작물을 극장 등에서도 공개 상영할 수 있는지, 반대로 극장용 영상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는지, 또는 영상저작물을 비디오테이프에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극장용 영상저작물은 극장 상영만, 방송용 영상저작물은 방송만 허락한 것이고, 또한 이

들을 비디오테이프로 복제하여 배포할 수 없다는 해석이 통설화되고 있다. 법원도 제74조에 따라 소설 등의 영상화를 허락받고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비디오테이프로 복제·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바 있다.³⁾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의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상저작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견해⁴⁾도 있지만,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자가 아니고,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이 양도의제되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자의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76조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제75조의 영상제작자가 양도의제받은 권리의 범위를 한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이용권을 양도의제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음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작곡자나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저작물이 음반에 고정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음반제작자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제67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은 음반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반에 수록된 음을 녹음 테이프 등에 녹음하는 것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 음반에서 음을 추출하여 다른 곳에 고정하거나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미친다. 음반제작자의 보호는 음악저작물의 성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제작자가 음반에 투입한 노력과 재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⁵⁾

음반에는 실연도 수록되어 있다.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연자의 권리 관계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자이며, 복제권(제63조)과 실연방송권(제64조)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음반 제작시 음반제작자는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연이 수록된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복제권과 실연방송권을 양도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만 얻으면 되지만, 음반에 수록된 실연자의 권리가 음반제작자에게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반제작자 뿐만 아니라 실연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보호도 영구적이 아니다. 저작물은 특정 조건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저작물은, 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종료하거나, 2)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되거나, 3) 저작권이 포기되거나, 4)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더 이상 보호되지 못한다.

첫째의 경우, 보통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50년간 존속한다(제36조 제1항). 단체명의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제38조, 제77조). 저작인접권의 경우, 실연은 실연한 때로부터, 음반은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로

3) 一審: 서울지법남부지원 1983. 10. 21. 83가합 7판결(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 제2집, 언론중재위원회, 1987). 항소심: 서울고법 1984. 11. 28. 83나 4449판결(84년 하급심판례집 제4권, 법원행정처, 1985). 상고심: 상고허가기각.

4) 장인숙, 저작권법원론(개정판), 보진제출판사, 1996년 7월, p. 227.

5) Jörg Kirchner, "The Search for New Markets: Multimedia and Digital Television under German Broadcasting and Copyright", 6 EIPR, 1995, p. 273.

부터, 및 방송은 방송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제70조).

둘째의 경우, 법령, 법원의 판결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제7조). 다만, 다른 사람이 편집해 놓은 법령이나 판결문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셋째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의 포기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행해져야 한다. 단순히 구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증 요건을 갖춘 서면에 의해서 포기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⁶⁾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개 장소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적극적인 포기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므로 저작재산권이 포기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존중하여야 한다.

넷째의 경우, 저작권자가 권리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저작권자인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된다(제46조). 이러한 저작물은 만인의 공유 상태에 놓이는 저작물이 된다.

2) 저작인격권의 처리

멀티미디어 정보물의 작성시 소재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색채가 포함된 저작물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하여 각국은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특히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을 양도나 포기할 수 없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저작인격권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작인격권의 양도나 포기를 인정하자는 의견과 동일성유지권을 축소·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3호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저작물의 부득이한 변경도 동조 제2항 3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저작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개인 정보 및 신용 정보 제작을 위한 권리 처리

멀티미디어 시대에 정보는 곧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를 On-line이나 Off-line을 통해 공중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에 관한 정보에는 개인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개인 자체에 대한 정보와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개인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가 있다.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없이 공중에 제공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신용정보업은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6) Michael D. Scott and James L. Talboatt, "Interactive Multimedia: What is it, Why is it Important and What does One need to Know about it?", 8 EIPR, 1993, p. 287.

나.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의 보호

1) 저작권법상 보호

가) 편집저작자로서의 보호

저작권법 제6조 제1항7)은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나 자료의 집합물만 뿐만 아니라 체계적 또는 조직적으로 정리된 정보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물은 그 정보나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달리 표현하면,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보물의 전체나 상당 부분을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하거나 그밖에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정보물은 그 소재가 되는 정보나 자료의 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제6조 제2항). 소재가 되는 정보나 자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기존 자료나 정보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선택, 정리 또는 배열로 얻어진 집합물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결국 정보물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편집저작물로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저작권법 제12조의 2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이 아니라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인한 창작성을 보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보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도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TRIPs협정 제10조 제2항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1996년 12월에 채택된 WIPO저작권 조약에서는 그 조약안 제5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종 채택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조약에 관한 합의록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베른 협약 제2조에 일치하며, TRIPs협정 제10조 제2항과 동등하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실제로는 베른 협약이나 TRIPs협정 수준으로 받아 들였다.

나) 편집저작자로서의 보호의 한계

멀티미디어 정보물이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저작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제6조 제1항). 다시 말해서 편집저작자는 일반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향유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7) 이 조항은 1994년 1월 7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가입에 앞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 TRIPs협정 제10조 제2항의 보호 수준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예정하여 개정된 규정이다.

또한, 우리 나라가 새로 채택된 WIPO저작권조약이나 실연·음반조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는 공중전달권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까지 갖게 되어 그 권리는 보다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 독창성이 있을 때만 보호되지만, 그 독창성의 수준이 낮아 그 보호의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독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나 상당 부분에 대해서만 편집저작자의 권리가 미치며, 그 일부의 이용에 대해서는 편집저작자의 권리가 미칠 수 없다. 이것은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를 부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이다. EU 데이터베이스 보호 지침이 특별히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독자적인 권리는 그 내용의 전체나 상당 부분의 이용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편집저작물은 독창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편집저작물 전체나 상당 부분이 아닌 일부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앞에서 정보제작자는 정보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독창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정보물, 즉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독창성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성의 수준을 일반 저작물보다 낮게 인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상당한 시간, 재원 및 노력을 투입한 편집저작물(멀티미디어 정보물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주장은 혼선을 거듭해 왔다.

한때 프랑스 대법원은 *Microfor v. Le Monde* 사건⁸⁾에서 독창성의 표준을 '편집자의 노고'에 두어 판단한 적이 있었다.⁹⁾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많은 사건의 결정을 위하여 독창성의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¹⁰⁾

일부 미국의 연방 법원들도 정보물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요건을 독창성에 두지 않고 '이마의 땀방울'(sweat of brow)에 두었다. 이러한 표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은 보석상의 주소 및 상표 목록에 대한 저작권 주장에 대한 *Jeweler's Circular Publishing Co. v. Keystone Publishing Co.* 사건에서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노동이 투입된 경우에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는 집합저작물의 독창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들인 땀(땀)에 달려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많은 사건들은 *Jeweler's* 사건의 이마의 땀방울 이론을 인용하였다. 가든의 이름과 주소를 알파벳순으로 나열하여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없는 목록에 대하여 자료의 편집에 들인 노고를 이유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한 *Schroeder v. William Morrow & Co.* 사건¹¹⁾, 사건 보도의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독창성과 지적 창작 표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노동의 투입을 받아들였던 *West Publishing Co. v. Mead*

8) Supreme Court judgment, November 9, 1983, 1984 Gazette du Palais, at 177.

9) Paolo Cerina, "The Originality Requirement in the Protection of Databas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IC*, Vol 24, 1993, p. 584.

10) *Ibid.*

11) 566 F.2d 3 (7th Cir., 1977).

Data Central Inc. 사건¹²⁾ 등이 바로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마의 팜방을 이룬 Feist Publishing,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s Co. 사건¹³⁾에서부터 부정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 법원은 주소별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하여 편집저작물성의 판단은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의 독창성에 달려 있다면서 전화번호부의 편집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Feist 사건의 판단을 인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이마의 팜방을 이룬 편집저작물성의 판단 기준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

Feist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클린턴 행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화당 Carlos Moorhead 의원은 HR 3531 법안, 즉 '1996년 데이터베이스 및 지적재산침해금지법안'(the Database and Intellectual Antipiracy Act of 1996)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가 그 내용의 집합, 확인, 구성 또는 제시에 있어서 양적이나 질적으로 인력, 기술, 재원이 투입된 결과물이고, 또한, 상업적으로 사용되거나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가진 때 보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법적 책임의 부담을 꺼려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베른 협약 제2조 제5항은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지적창작물이 되는 백과사전이나 선집과 같은 ... 수집물은 ... 지적창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편집저작물이나 집합저작물의 저작물성의 판단을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의 독창성에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독창성의 표준이나 수준이 아니라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지침을 채택하였다. 1996년 3월 11일 채택된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를 부여하고 있다. EU 지침 제7조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추출¹⁴⁾하거나 추출하여 재이용¹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추출권이나 재이용권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 양적 또는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추출이나 재이용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지침 제8조 제1항).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1998년 1월 1일 까지 시행하여야 하지만, 이 시한 내에 지침을 시행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EU 회원국들은 결국에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¹⁶⁾

또한 지난 1996년 12월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을 채택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급년 9월 중순에 제네바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도 재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보호에 대한 토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하여 논의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선진

12) 799 F.2d 1219 (8th Cir. 1986).

13) 111 S. Ct. 1282 (1991).

14) '추출'이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특정한 수단이나 형식으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지침 제7조 제2항(a)].

15) '재이용'이란 복제물의 배포, 대여, 온라인 그밖의 송신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지침 제7조 제2항(b)].

16) 회원국들이 지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유럽위원회는 EC조약 제169조에 따라 최종 법적 시행 절차를 밟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포르투갈이 '위성방송 및 유선 송신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럽사법법원은 EC조약 제169조에 따라 제기된 Commission v. Italy 사건[(1987) ECR 773]에서 EC조약 제171조는 회원국들에게 법원의 결정을 짧은 시간 내에 직접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International News, Copyright World, February 1997, p.7).

국의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선택 또는 배열을 독창적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대비하거나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직접 권리 구제에 나서기 위하여 가능한한 소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 좋다.

3) 멀티미디어 정보의 손괴나 파괴로부터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의 보호

온라인 상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나 자료는 손괴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시스템 운영자(system operator)의 ID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 또는 기술 장치가 해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를 손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제작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정보제작자의 정보를 손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정보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996년 7월 1일 개정 발효된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제366조). 여기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과 자기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의미하는 전자기록을 포함한 레이저광이나 광디스크를 이용한 기록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¹⁷⁾ 따라서 데이터 자체는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고, 디스켓이나 디스크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용기는 재물에 해당한다. 어느 것이든 이러한 재물이나 기록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로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특수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제314조). 따라서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는 자신의 정보가 손괴되거나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형법의 손괴죄나 특수업무방해죄는 특수매체기록물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것을 손괴하거나 그로인한 업무의 방해를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벌칙은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벌칙 규정에 그대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멀티미디어 정보의 기술 조치 보호

일반적으로 기술 조치는 허락받지 않은 복제를 금지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거나,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거나, 복제 등 이용 및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해진다.

기술 조치의 보호는 WIPO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의 채택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각 조약 제11조와 제18조에서 채택되었다. 이들 조항은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기술조치로서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결국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과 관련된 규정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한 기술 조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은 WIPO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 제1201조 (a)에서는, "(1) 누구도 미국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 보호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며, (2) 이러한 기술 보호 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제작된 물품, 설비, 장치, 부품이나 이러한

17) 정성근, 형법각론(전정판), 예문사, 1996, p. 585.

것들의 부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공중에 제공하거나 그밖에 기술적으로 유통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술 보호 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주파수대를 변환한 저작물을 역변환하거나 암호화된 저작물을 해체, 또는 그밖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 보호 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안 제1201조 (a)(3)(A)].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곧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저작물의 불법 복제나 무단 이용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는 권리자의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 조치의 보호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앞으로 WIPO저작권조약의 가입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WIPO저작권조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 조치의 보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 및 서비스에 따른 책임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정보제작자 및 정보제공자는 이용하는 정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책임이 있다. 사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인줄 알면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동 불법 행위로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용하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더라도 그러한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물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간접적인 사례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의 주의의무 책임을 살펴보자.

지난 1996년 우리 대법원은, 모방송사가 방송한 주말연속극이 원고의 법조 소설의 사건 내용 및 표현을 그대로 또는 다소의 변경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방송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¹⁸⁾에서, “방송사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 방송사 및 피고 방송제작단과 방송극 작가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방송극 작가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사한 사건¹⁹⁾에서 일본 고등법원은 우리 대법원의 결정과는 상당히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일본 고법은, 모방송사가 소설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여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방송사업 및 프로그램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방송사는 그 제작·방영할 텔레비전 드라마가 타인의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을 제3자에게 위탁·제작하여 방영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방송사와 제작자간에 체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계약에 저작권 등의 문제를 모두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1996년 12월 독일에서 제안된 정보통신법률안(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gesetz)을 보면, 정보제공자는 모든 침해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해서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았거나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합리적이고

18) 대판, 1996. 6. 11. 95다49639, 손해배상.

19) 도쿄 高判, 1996. 4. 16. 1993(ネ)3610호, (ネ)3704호, 손해배상.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사례나 법안을 살펴볼 때, 일본은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작하는 경우에 그 제작자나 서비스하는 자에게 폭넓은 주의의무 책임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독일은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작할 때 침해 저작물인지를 확인할 제작자의 주의의무 책임을 상당히 좁게 인정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법원은 저작물 이용시에 주의의무 책임을 묻고 있으며, 또한 모든 결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리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정보제작자들은 주목하여야 한다.

4. 멀티미디어 시대를 위한 저작물 이용 허락 체제의 개선 및 발전 방향

가.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5개의 집중관리단체가 있다.²¹⁾ 한두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하고, 활동 역시 빈약하다. 각 단체들에 등록된 회원수를 살펴보면, 그 열악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수는 2,800명('96년 6월 기준),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회원수는 604명('96년 4월 기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회원수는 960명(25개단체 별도)('97년 6월 기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단체회원수는 10개('94년 12월 기준), 한국영상음반협회의 단체회원수는 36개 단체('93년 12월 기준)로 되어 있다.

국내 집중관리단체는 단체수나 그 단체의 회원수에서 외국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집중관리단체가 빈약하면 할수록 저작물 이용자들은 그 이용을 위하여 개별 저작권자와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가중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목적 이외에도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집중관리단체간 협력

집중관리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서 비롯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종 다양한 정보나 저작물이 매체에 한꺼번에 수록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저작물 이용자들은 많은 저작권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가 많은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면, 저작물 이용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빈약한 국내 집중관리단체의 상황으로 볼 때, 추가 회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관리단체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용허락업무까지 공조할 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용허락업무체제를 On-line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나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은 Off-line에 한해서만이라도 단체간 협조 체제의 구축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서 이러한 협조 체제가 성공할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On-Stop Shopping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P. Bernt Hugenholtz, "Copyright and Information Law in A Digital Networked Environment : A European Perspective", (Internet : 제3의 미디어인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조선일보 주최, 1997 국제세미나자료), pp. 47-48.

2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가 있다. 전자의 3단체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 모두를 신탁 관리하고 있으며, 후자의 2단체는 판매음반의 실연과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금청구권과 음반의 대여허락권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저작권집중허락제도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미디어사진작가단체(American Society of Media Photographers Inc.), 그래픽미술가노동조합(Graphic Artists Guild Inc.), 작가단체(National Writers Union) 및 저작권이용허락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들이 연맹을 결성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업무까지 공조하고 있다.²²⁾

다. 권리관리정보의 확보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이용자를 위하여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와 저작물의 이용 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관리정보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하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정보는 보통 개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도이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권리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권리관리정보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라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저작권 등록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배른협약이나 우리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강제하거나 등록을 의무화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법제하의 등록은 큰 실효성이 없다. 등록의 효과가 저작자를 추정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정도(제52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 등록에 대한 보다 강한 효과를 부여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위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 청구권을 저작권 등록에 연계시키거나 또는 저작물의 추정 부수를 등록에 연계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작물의 보호를 등록과 연계시키는 것은 배른 협약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²³⁾ 그러나 저작물의 보호를 등록에 직접 연계시키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이 미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미국법 제411조(a)). 또한, 미국은 법정 손해에 관한 규정을 두어, (1) 미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등록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거나, (2) 저작권의 침해가 발행된 때로부터 등록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나중에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손해 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법 제412조, 제504조, 제505조). 이것으로 볼 때,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침해 구제 수단을 등록과 연계시킴으로써 저작물 보호를 위하여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어쨌든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등록과 저작권 침해 소송 청구권을 연계한 미국의 법제도가 아직까지 배른 협약 제5조 제2항에 위배가 되어 조약 위반의 판정을 받은 바는 없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한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한하여 저작권 등록에 재판청구권을 연계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봄직 하다.

둘째, 등록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이것의 실현 방법으로는 부정복제물의 추정 부수 규정(제94조)을 개정하여 대상물의 범위를 넓히고 그 부수를 올려,²⁴⁾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시 저작자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을

22) International News; "Collective Licensing for Photographers, Artists and Writers", *Copyright World*, June/July, p. 12.

23) WIPO,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Geneva, 1978, p. 33.

24) 현재 저작권법 제94조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10,000매로 부정복제물을 추정하고 있다.

유인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권리 정보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물 이용자들은 이용하는 저작권 관계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저작권정보서비스센터'(Japan Copyright Service Center ; J-CIS)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고 한다.²⁵⁾

라. 법정허락제도의 재검토

현행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도입된 1987년 이래로 아직까지 법정허락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법정허락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법정허락절차가 까다롭고, 승인이 쉽게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꼭 이용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저작권 침해를 감수하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47조 제1항의 법정허락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결 어

1. 멀티미디어 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지만 그 독창성의 수준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 재원 및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하거나, 선진국의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진흥 발전에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저작인격권 자체의 포기나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그 침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포기나 양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법체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시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나 변경에 대비하여 저작자로부터 사전 양해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도 좋다.

3. 멀티미디어 정보제작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물인지를 사전에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멀티미디어 시대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간 협력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에 저작물 이용허락업무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나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작권관련정보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정보를

2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일본, 권리정보에 대한 모델 데이터베이스 개발", 저작권 소식 제 36호, 1997년 7월, pp. 5-6.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저작권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미국처럼 저작권 등록제도를 재판청구권과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저작물 부수 추정 규정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6.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정허락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장인숙, 저작권법원론(개정판), 보진제출판사, 1996년 7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소식" 제36호, 1997년 7월.
정성근, 형법각론(전정판), 예문사, 1996.
한국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1994년 12월 제2판.
Cerina, Paolo, "The Originality Requirement in the Protection of Databas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IC*, Vol 24, 1993.
Hugenholtz, P. Bernt, "Copyright and Information Law in A Digital Networked Environment : A European Perspective", (Internet : 제3의 미디어인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조선일보 주최, 1997 국제세미나자료), pp. 47-48.
Jenkins, Neil, "The Exploitation of US and UK Copyright in Multimedia Games", 4 *Ent.LR* 143, 1994.
Kirchner, Jörg, "The Search for New Markets: Multimedia and Digital Television under German Broadcasting and Copyright", 6 *EIPR*, 1995, p. 273.
Scott, Michael D. and Talboatt, James L., "Interactive Multimedia: What is it, Why is it Important and What does One need to Know about it?", 8 *EIPR*, 1993.
WIPO,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Geneva, 1978.